용인중앙공원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0. 06.

국토교통부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1.2 계획의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 2]의 2.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지정면적:821,203㎡)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공급촉진지구 지정)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 2]

(2) 개발진흥지구 지정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 2]의 2.개발기본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면적:821,203㎡)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 -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개발진흥지구 지정)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표 2]

나.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용인중앙공원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 면 적 : 821,203㎡

○ 사 업 기 간 : 2020년 ~ 2025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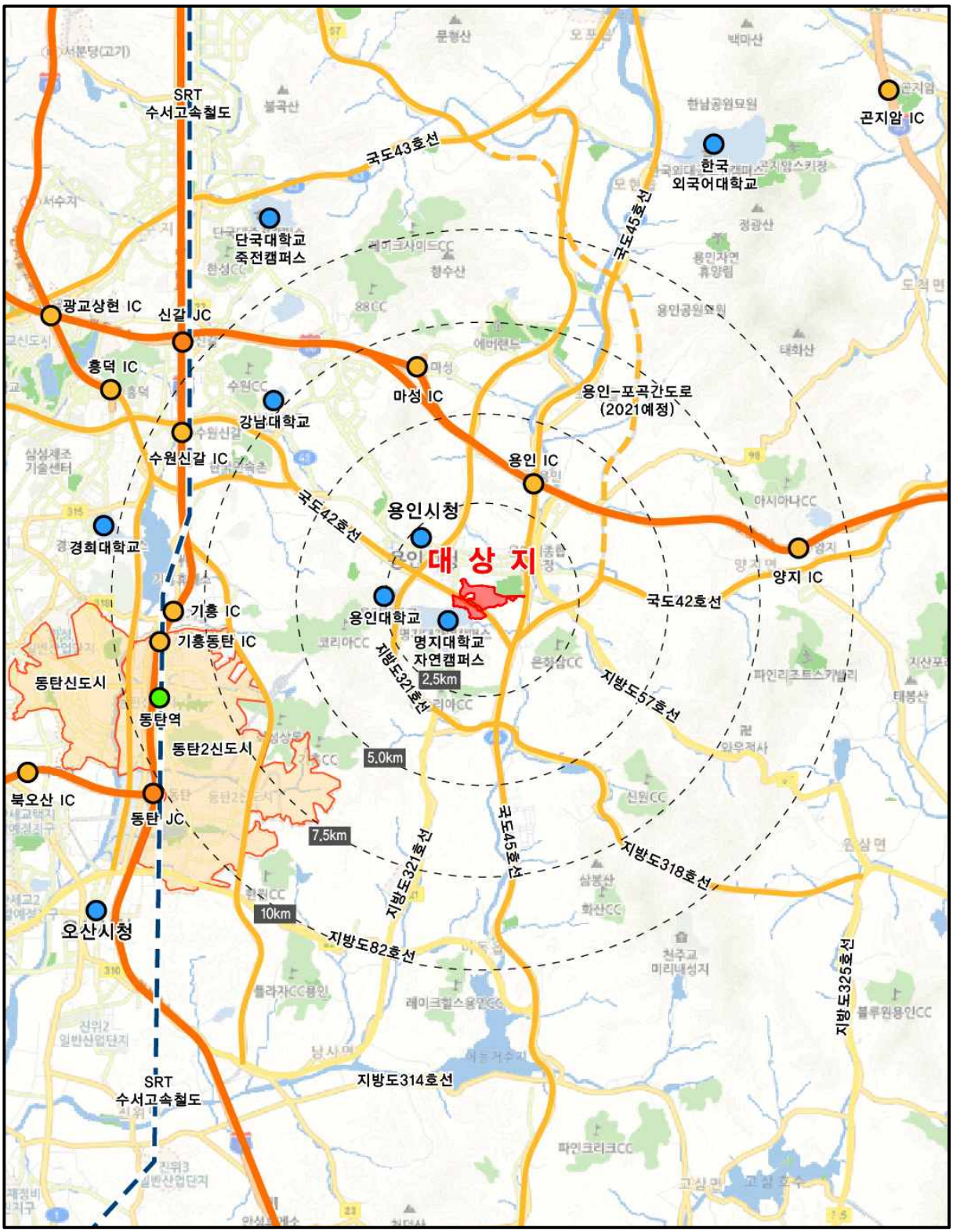

(그림 1.2 - 1) 계획지구 위치도

다.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개발진흥 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용인시 처인구 남동,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	821,203	-	

(나)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①	개발진흥지구	○ 신설 - 면적 : 821,203㎡	○ 사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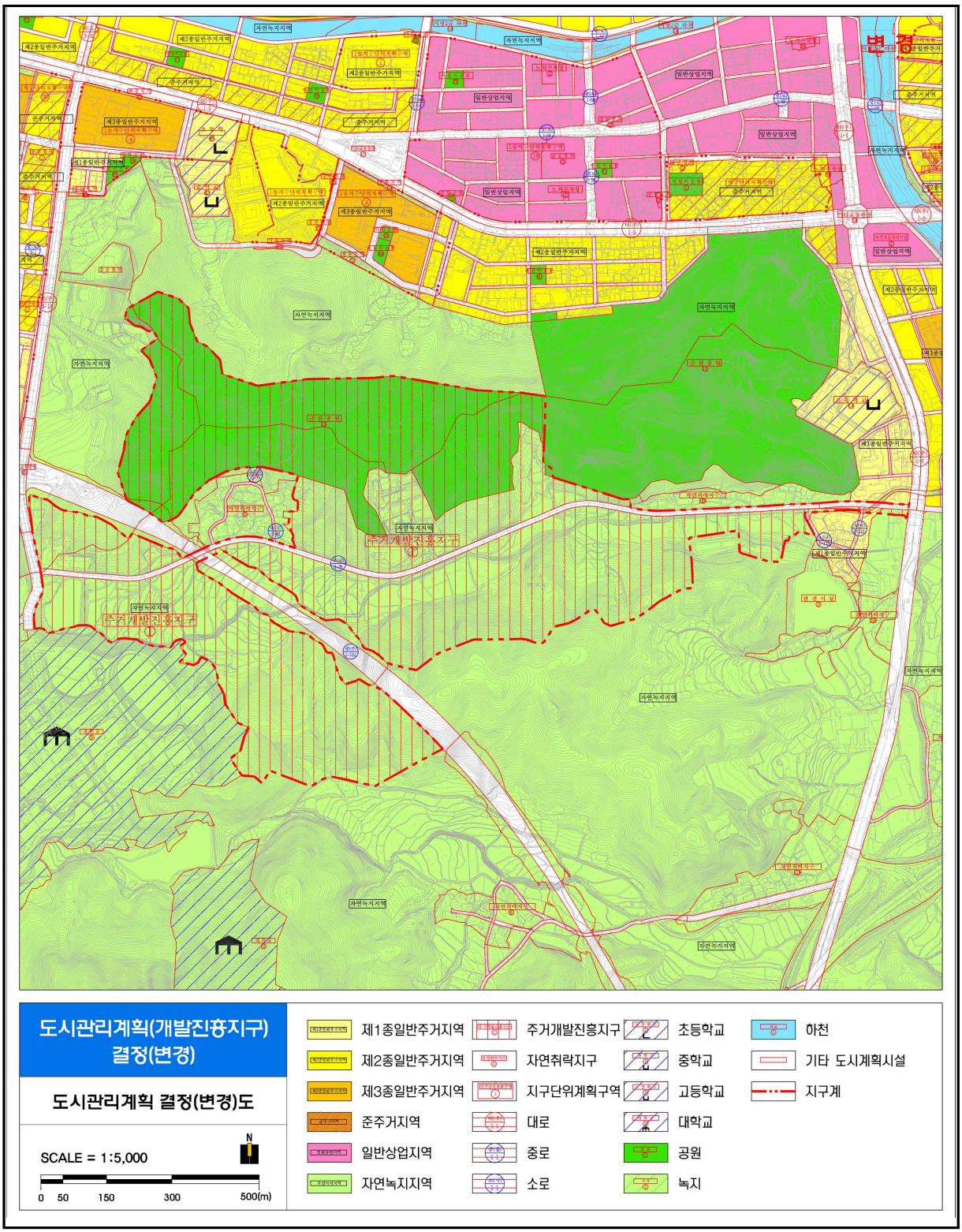

(그림 1.2 - 2)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대상지역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표 2.2.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공간적	시간적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사업시행시 동·식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식물상 : 주변 0.1㎞ 이내 ○동물상 : 주변 0.5㎞ 이내	○공사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사업시행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시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사업시행시 토사유출에 의해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계획지구 ○하류수계	○공사시 ○운영시

<표 2.2.1 - 1> 계 속

구 분	세부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공간적	시간적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공사장비 가동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주변 0.5㎞ 이내	○공사시
			온실가스	○공사장비 가동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지역 ○난방 및 전력사용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토 양	○폐유 유출에 따른 토양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장비 가동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주변 0.3㎞ 이내	○공사시
			일조장해	○건축물 조성에 따른 일조권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운영시 오수발생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위탁처리 등 관리방안 수립	○계획지구 ○용인시	○공사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지구 편입토지의 변화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인구·주거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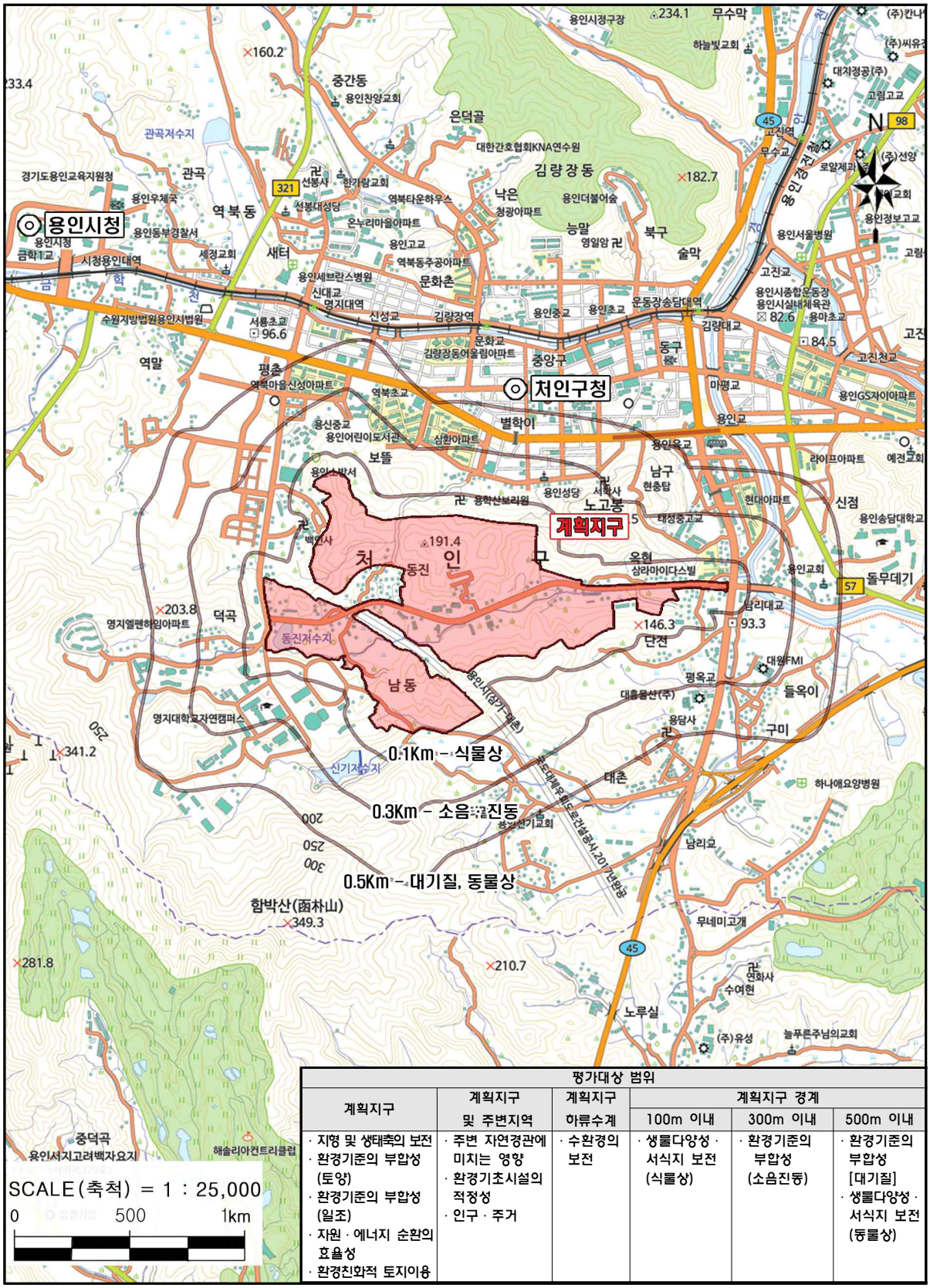

평가대상 범위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하류수계	계획지구 경계		
			100m 이내	300m 이내	500m 이내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환경기준의 부합성 (토양) · 환경기준의 부합성 (일조) ·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인구 · 주거	· 수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식물상)	· 환경기준의 부합성 (소음진동)	·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물상)

(그림 2.2.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나. 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대기·수·토지·생활환경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표 2.2.1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분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공간적	시간적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사업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식물상:사업지구 경계 100m이내 ◦동물상:사업지구 경계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 국지적 기상특성 분석 ◦타 항목 기초자료 활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대기질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난방연료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경계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지역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수환경	수질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표 2.2.1 - 2> 계 속

구분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공간적	시간적
수환경	수리·수문	◦사업지구 주변지역 주요 수계 유황변화 분석 및 대책수립 ◦운영시 도시화로 인한 강우시 홍수유출량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적정성(토지이용계획 등)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토양	◦공사시 폐유 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사업지구	◦공사시
	지형·지질	◦깎기·쌓기로 인한 지형변화 ◦강우시 토사유출 ◦비옥토 유실	◦사업지구	◦공사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 ◦운영시 시설 이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	◦사업지구 경계 3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경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지형변화 및 공동주택 입주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일조장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일조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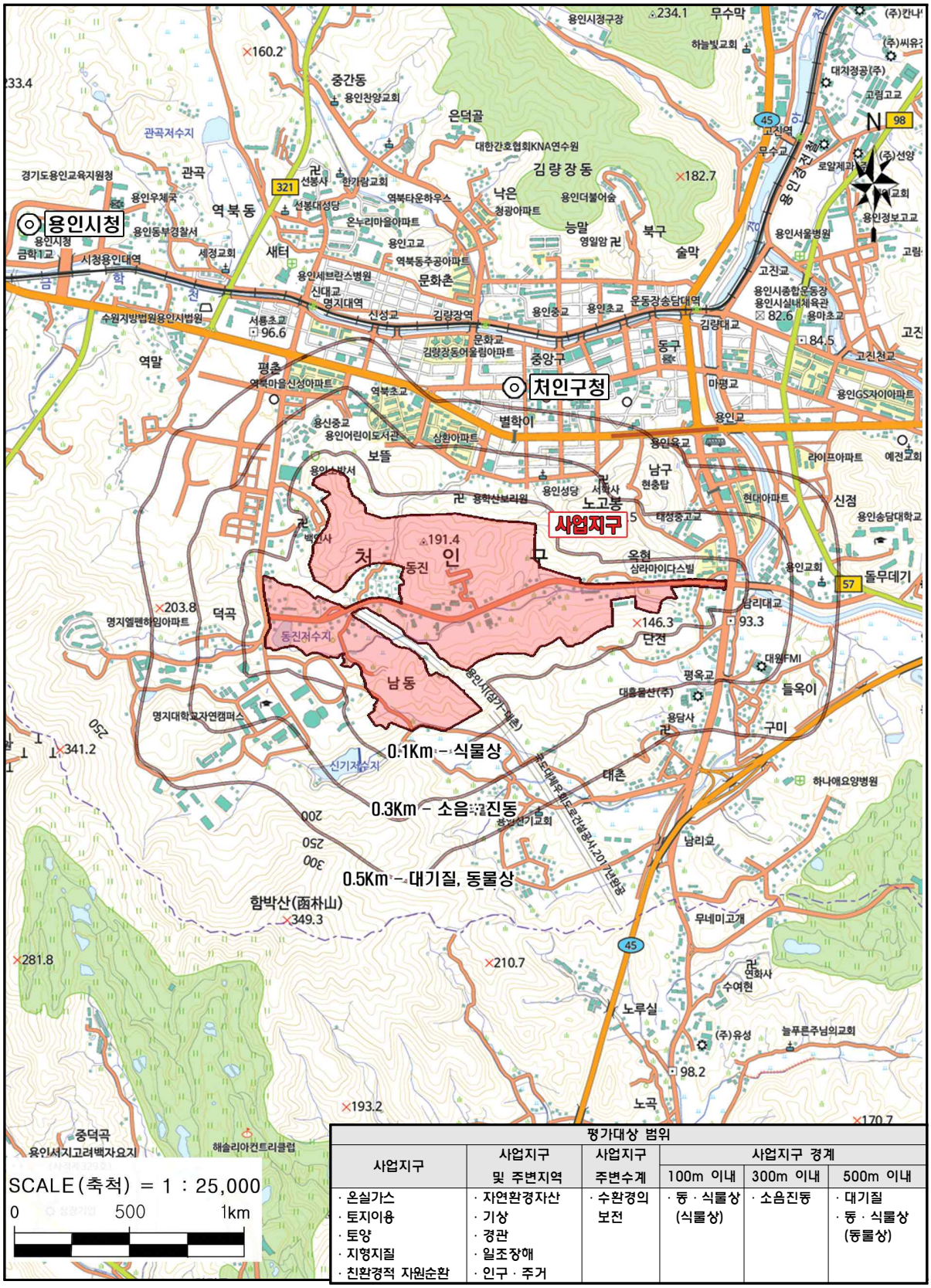

평가대상 범위					
사업지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주변수계	사업지구 경계		
			100m 이내	300m 이내	500m 이내
· 온실가스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자연환경자산 · 기상 · 경관 · 일조장해 · 인구 · 주거	· 수환경의 보전	· 동 · 식물상 (식물상)	· 소음진동	· 대기질 · 동 · 식물상 (동물상)

(그림 2.2.1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선정방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에 의거하여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함.

<표 2.2.2 - 1> 대안의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의 선정방법	비교방법
계획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계획수립 여부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토지이용계획 비교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계획지구 경계 조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

나. 대안의 검토 및 선정

(1) 계획 비교

○ 계획 미 수립(No Action) 및 계획수립(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2.2 - 2> 계획 비교

구 분		계획 미수립	계획 수립
내 용		No Action	Action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생태계 변화 없음.	○공원,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조성으로 생태환경을 조성함.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보호지역 영향 없음.	○녹지 등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주변 자연경관(계획지구 주변 산림 및 하천)과 조화되도록 계획지구 내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함.
	수환경의 보전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점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로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질 변화 없음.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및 운영시 LNG (청정연료)사용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기초시설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영향 없음	○지장물 철거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됨.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구성으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선정안			◉

(2)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비교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대한 2가지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음.

<표 2.2.2 - 3> 수요·공급 비교

<table>
<tr><th>구분</th><th>대안1</th><th>대안2</th></tr>
<tr><td rowspan="2">토지
이용
계획</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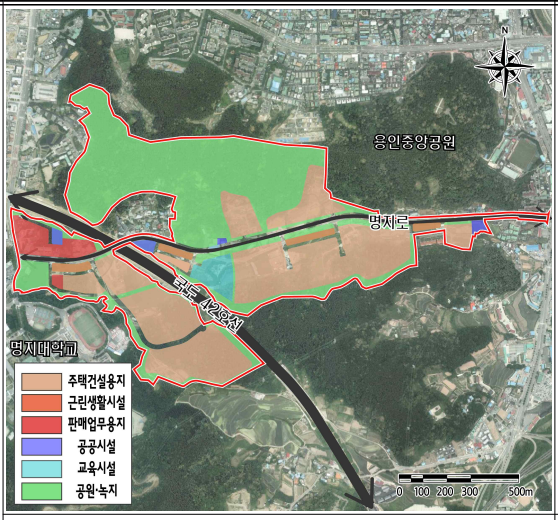

<table>
<tr><th>구분</th><th>면적(㎡)</th><th>구성비(%)</th></tr>
<tr><td>합계</td><td>821,203</td><td>100.0</td></tr>
<tr><td>주택건설용지</td><td>300,250</td><td>36.6</td></tr>
<tr><td>판매업무시설</td><td>23,026</td><td>2.8</td></tr>
<tr><td>기반시설용지</td><td>497,927</td><td>60.6</td></tr>
</table></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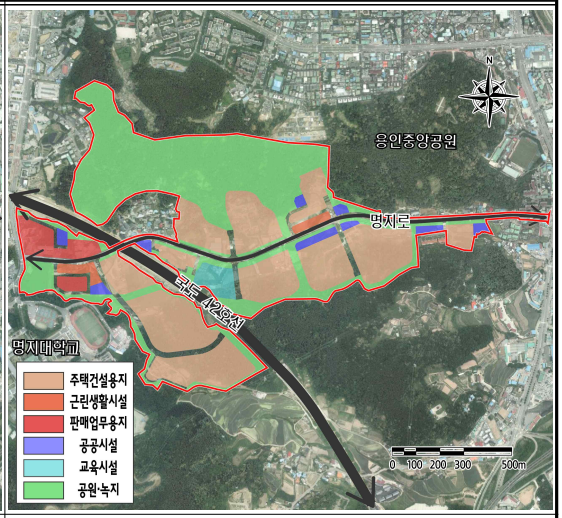

<table>
<tr><th>구분</th><th>면적(㎡)</th><th>구성비(%)</th></tr>
<tr><td>합계</td><td>821,203</td><td>100.0</td></tr>
<tr><td>주택건설용지</td><td>303,147</td><td>37.0</td></tr>
<tr><td>판매업무시설</td><td>26,677</td><td>3.2</td></tr>
<tr><td>기반시설용지</td><td>491,379</td><td>59.8</td></tr>
</table></td></tr>
<tr><td>특징</td><td>○ 중앙공원과 연계한 공원조성 및 주거용지를 중심으로 연접지역 개발
○ 중앙공원, 동진천 연계한 공원녹지계획
○ 명지로 확장 및 도로선형 변경을 통한 동서축 중심도로 계획</td><td>○ 중앙공원과 연계한 공원조성 및 주거용지를 중심으로 연접지역 개발
○ 중앙공원, 동진천 연계한 공원녹지계획
○ 명지로 확장을 통한 동서축 중심도로계획</td></tr>
<tr><td>장점</td><td>○ 명지대 인근 판매업무시설 집중화하여 상업기능 활성화 및 단독주택 배치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
○ 단지 내·외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명지로 도로선형 변경
○ 근린생활시설 분산배치로 주민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식생이 양호한 산림은 보존형 공원조성</td><td>○ 명지대 인근 판매업무시설 집중화하여 상업기능 활성화
○ 공동주택용지 최대한 확보하여 주거단지 기능 강화
○ 동진천 하류부에 저류시설 계획하여 홍수예방 효과 향상</td></tr>
<tr><td>단점</td><td>○ 대안2에 비해 저류시설 부족</td><td>○ 식생이 양호한 산림을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여 자연환경 보존 미흡</td></tr>
<tr><td>선정
사유</td><td colspan="2">○ 대안1은 양호한 산림(식생보전등급 2등급지)을 보존하기 위해 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주민의 생활 편의성 증대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분산배치 하였음
○ 효율적인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선형변경 및 부지 정형화를 고려한 대안1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됨</td></tr>
<tr><td>선정</td><td>◉</td><td></td></tr>
</table>

(3)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

○ 행정계획 수립(Action)에 따른 입지(계획지구 경계 조정) 변화를 통한 비교·분석을 실시함.

<표 2.2.2 - 4> 입지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지구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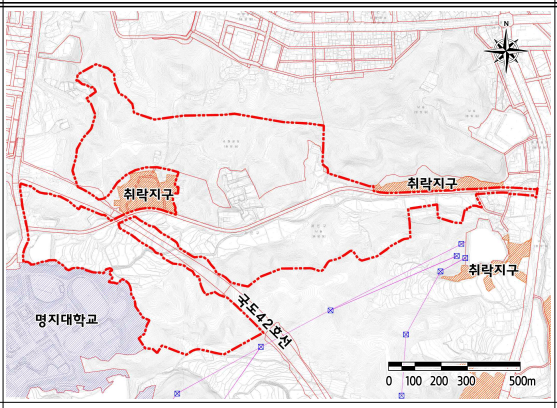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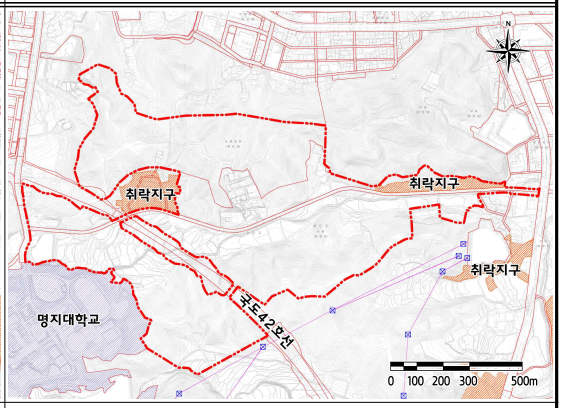
면적	○ 821,203㎡	○ 913,576㎡
특징	○ 도시계획시설(공원) 포함 ○ 양호한 산림 미포함 및 지형고려 결정 ○ 취락지구 미포함, 국도를 통과하는 도로 최소화	○ 도시계획시설(공원) 포함 ○ 기훼손지 포함하여 개발가용지 최대한 확보 ○ 취락지구 일부포함, 국도를 통과하는 도로 추가계획
장점	○ 기존 취락지구를 제외하여 주민 반대민원 해소 가능 ○ 국도42호선과 교차하는 도로 최소화(기존도로 활용) ○ 남측 송전선로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 취락지구 일부포함하여 개발로 인한 잔여부지 최소화로 계획적인 토지활용성 증대 ○ 개발 가용지 최대한 확보 가능
단점	○ 개발 후 잔여지(취락지구) 발생하여 계획적인 토지활용성 미흡 ○ 개발 가용지가 대안2에 비해 적음	○ 양호한 산림 및 농경지 포함하여 주변환경 훼손 가능 ○ 국도42호선과 교차하는 도로 추가발생 ○ 남측 송전선로와 짧은 이격거리로 전파영향 우려
선정 사유	○ 양호한 산림 및 농경지를 제척하여 주변 환경 영향 최소화 ○ 기존 취락지구 제척으로 주민반대 민원 해소 ○ 국도42호선을 통과하는 도로를 최소화하여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 가능	
선정	◉	

(4) 대안의 선정

○ 계획 비교, 수요·공급 및 입지 비교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 결과 행정계획 수립(Action) 중 대안 1을 선정함.

- 주민의 생활 편의성 증대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분산배치 하였고, 기존 취락지구 제척으로 주민반대 민원이 해소되며, 양호한 산림 및 농경지를 제척하여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2.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 설정

○ 본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평가항목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된 개발기본계획 세부평가항목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 환경부」, 「전략환경영향 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함.

<표 2.2.3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선정결과		선정(제외)사유
		선정	제외	
1) 계획의 적정성		○	-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계획 수립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 수립 전·후,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	-	
가)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	○계획 수립시 생태계 변화 및 서식지 훼손 등에 따른 영향검토 ○육상 및 육수생태계의 서식현황 변화, 법종보호종 출연여부 파악 및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등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	○계획 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변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	○계획 수립에 따른 주요 조망점 및 스카이라인 등의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	-	○계획 수립에 따른 수환경의 영향 -공사시 투사유출 및 운영시 오수 및 비점오염원 발생 등 -인근 수계의 수리수문 현황 및 치수 안정성 부합 여부 검토 등
나)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	-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기상) ○계획 수립에 따른 대기, 토양, 소음·진동 등 영향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연계처리 검토 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발생 및 처리대책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계획시행 전·후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상의 변화

(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3 - 2>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본 계획 관련 기존 개발계획 및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 등), 관련계획과 동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조사결과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식물상 현황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동물상 현황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현황 ▸육수생물상 현황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 현황 ▸특이할만한 종분포 및 서식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중점 -계획지구 및 주변하천 일대 ▸광역 -계획지구 주변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계획지구 주변 ▸조사회수 : 2회	○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영향, 훼손수목발생 및 예측 ○동물상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 예측 및 평가 ○육수생물상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과 사업시행으로 이들 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식물상 : 계획지구 주변 100m 이내 ○동물상 : 계획지구 주변 500m 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지형현황 및 분석, 주요 산맥 분포현황, 지질 특성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깎기·쌓기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생태축, 녹지축 등 생태축 단절 영향 검토	○계획지구

<표 2.2.3 - 2> 계 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경관 우수지역 현황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 정도, 조망의 변화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계획지구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인근 하천 등 수계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지표수 4개 지점 × 2회 ▸지하수 2개 지점 × 2회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수질오염총량 검토 ○운영시 급수 및 우·오수 처리계획	○계획지구 ○주변수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주변 500m이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5개 지점 × 2회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AERMOD 확산모델 이용 ○온실가스 발생영향 검토	○계획지구 주변 500m 이내 ○계획지구
		토양	① 조사내용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3개 지점 × 2회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계획지구

<표 2.2.3 - 2> 계 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소음 진동	① 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정온시설을 포함한 사업지구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반경 300m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소음 : 5지점 × 2회 ▸진동 : 5지점 × 2회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 목표 설정 및 저감방안 수립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운영시 통행차량에 따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영향 예측	○계획지구 반경 300m 이내
	환경 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조사 조사	○발생 오수 및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한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 법규정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조사 조사	○계획시행으로 발생되는 공종별, 종류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 규정 적용 및 준수 여부 검토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폐기물 적정 처리 가능 여부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① 조사내용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장래 변화예측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변화 예측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나. 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설정

○ 상기에서 추출된 본 사업의 환경영향요인과 연계하여 사업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출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8-205호, 2018.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2013. 01, 환경부」 및 유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16개 항목을 평가대상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2.2.3 -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평가항목

구 분	항목수	평 가 항 목
대기환경	4개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 환 경	3개	○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3개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2개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7개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3개	○ 인구, 주거, 산업
계	22개	-

<표 2.2.3 - 4> 본 사업의 평가대상 항목 설정

구 분	항목수	평 가 항 목
대기환경	3개	○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 환 경	2개	○ 수질, 수리·수문
토지환경	3개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2개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4개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2개	○ 인구, 주거
계	16개	-

(2) 중점평가, 현황조사, 제외항목 선정

○ 환경인자(환경항목) 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중요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18-205호, 2018.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 평가항목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2011. 12)」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 중 「가. 도시의 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사업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15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또한,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1개 항목을 현황조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6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표 2.2.3 -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주요평가 항목

구 분	대 상 사 업	주 요 평 가 항 목
가.도시의 개발사업	1)도시개발(주택지조성 또는 시가지조성 등)사업 2)도시정비사업 3)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사업(운하,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4)대지조성사업 5)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1) 내지 5)의 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일조장해, 위락·경관

자료 :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2011. 12, 환경부

(3) 중점평가, 현황조사, 제외항목 선정사유

○ 사업계획 및 지역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평가,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2.2.3 - 6> 중점평가, 현황조사, 제외항목 선정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정(미포함) 사유
		중점	현황	제외	
		15개	1개	6개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	-	► 식생훼손 정도 및 이식수목 파악, 공사시 육상동물상 변화, 주요종(법적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등)서식여부 및 보전대책
	자연환경자산	○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대기환경	기상	-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기상대 및 인근AWS자료)
	대기질	○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 및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질 영향 예상
	온실가스	○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 및 에너지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악취	-	-	○	► 사업지구내 악취유발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
수환경	수질	○	-	-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인한 주변수계 영향 검토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수리·수문	○	-	-	► 인근 수계의 수리수문 현황조사 및 토사유출 및 홍수위, 홍수량 검토를 통해 재해안전성검토
	해양환경	-	-	○	► 사업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토지환경	토지이용	○	-	-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 양	○	-	-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	-	► 토공구간의 깎기·쌓기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소음·진동	○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 운영시 유발교통량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경관	○	-	-	► 깎기·쌓기 및 구조물설치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위생·공중보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위락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 신축건물 입지에 따른 일조영향 예상
	전파장해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사회경제환경	인구	○	-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현황 파악
	주거	○	-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현황 파악
	산업	-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4)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3 - 7>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대 기 환 경	기 상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기상연보 ○기상대 또는 필요시 AWS 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현황 오염원(면·선·점) 파악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주변 500m이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5개 지점 × 2회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누적평가 고려) ○AERMOD 등의 확산모델 이용	○사업지구 주변 500m 이내
	온 실 가 스	① 조사내용 ▸운영시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조사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정리	○공사시 장비가동 및 운영시 연료 사용을 산정후 IPCC 배출계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신재생에너지 도입 검토	○사업지구
수 환 경	수 질	① 조사내용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 항목의 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인근 하천 등 수계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지표수 4개 지점 × 2회 ▸지하수 2개 지점 × 2회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수질오염총량 검토 ○운영시 급수 및 우·오수 처리계획	○사업지구 주변수계

<표 2.2.3 - 7> 계 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수 환 경	수 리 · 수 문	① 조사내용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② 조사방법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재해(홍수 등) 영향 검토	○사업지구 주변수계
토 지 환 경	토지 이용	① 조사내용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사업지구
	토양	① 조사내용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3개 지점 × 2회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예측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사업지구
	지형 · 지질	① 조사내용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사면안정성 검토, 연약지반 검토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사업지구

<표 2.2.3 - 7> 계 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동 · 식물상	① 조사내용 ▸식물상 현황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동물상 현황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현황 ▸육수생물상 현황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 현황 ▸특이할만한 종분포 및 서식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하천 일대 ▸광역 -사업지구 주변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주변 ▸조사회수 : 2회	○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영향, 훼손수목발생 및 예측 ○동물상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 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육수생물상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과 사업 시행으로 이들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식물상 : 계획지구 주변 100m이내 ○동물상 : 계획지구 주변 500m이내
	자연 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조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생활 환경	친환 경적 자원 순환	① 조사내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조사 조사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공종별, 종류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폐기물 적정 처리 가능 여부 검토	○사업지구

<표 2.2.3 - 7> 계 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생활 환경	소음 · 진동	① 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조사 ▸정온시설을 포함한 사업지구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고층건물은 층수확인)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반경 300m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소음 : 5지점 × 2회 ▸진동 : 5지점 × 2회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운영시 통행차량에 따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 영향 예측	○사업지구 주변 300m이내
	경관	① 조사내용 ▸경관 우수지역 현황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 (근경·중경·원경)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실시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해당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일조 장해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주변 고층건물 현황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로 인한 사업지구 내 일조영향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주거	① 조사내용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장래 변화 예측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변화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2.4 환경 현황조사 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지표·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2.2.4 - 1> 조사지점 및 선정사유

평가항목			조사지점		비고
환경 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A-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교육시설
		A-2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35-29	역북아파트	주거시설
		A-3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8	나우빌 아파트	주거시설
		A-4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61	용인송담대학교	교육시설
		A-5	경기 용인시 처인구 신기로 26-4	소노팰리채	주거시설
	토양	S-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99-1	-	-
		S-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70-9	-	-
		S-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152-2	-	-
	소음 · 진동	NV-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교육시설
		NV-2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35-29	역북아파트	주거시설
		NV-3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8	나우빌아파트	주거시설
		NV-4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59-2	태성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NV-5	경기 용인시 처인구 신기로 26-4	소노팰리채	주거시설
수환경 보전	지표 수질	W-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618	경안천	-
		W-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128-1	-	-
		W-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673	-	-
		W-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86-10	금학천	-
	지하 수질	GW-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71-41	-	-
		GW-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91-4	-	-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2.2.4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 현황조사 계획지점도

나. 환경영향평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지표·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2.2.4 - 2> 조사지점 및 선정사유

평가항목			조사지점		비고
환경 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A-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교육시설
		A-2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35-29	역북아파트	주거시설
		A-3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8	나우빌 아파트	주거시설
		A-4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61	용인송담대학교	교육시설
		A-5	경기 용인시 처인구 신기로 26-4	소노팰리채	주거시설
	토양	S-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99-1	-	-
		S-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70-9	-	-
		S-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152-2	-	-
	소음 · 진동	NV-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교육시설
		NV-2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35-29	역북아파트	주거시설
		NV-3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8	나우빌아파트	주거시설
		NV-4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59-2	태성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NV-5	경기 용인시 처인구 신기로 26-4	소노팰리채	주거시설
수환경 보전	지표 수질	W-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618	경안천	-
		W-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128-1	-	-
		W-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673	-	-
		W-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86-10	금학천	-
	지하 수질	GW-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71-41	-	-
		GW-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91-4	-	-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림 2.2.4 - 2) 환경영향평가 환경 현황조사 계획지점도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결정내용 공개

○ 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용인시)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국토교통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의견수렴계획

○ 전력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초안공람 등을 실시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시 평가서와 요약서를 함께 비치
- 주민설명회 시 플랜카드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나.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에는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

(2)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의견수렴 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등을 실시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시 평가서와 요약서를 함께 비치
- 주민설명회 시 플랜카드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